대학혁신지원사업 특별위원회 규정

제정 2018. 04. 12.
제3차 개정 2019. 06. 25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장관이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학혁신지원사 업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 설치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법률 및 상위 규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①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실무에 관한 사항
②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세부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
③ 대학 혁신전략에 관한 사항
④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⑤ 사업 집행지침에 관한 사항
⑥ 사업추진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⑦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⑧ 그 밖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. (개정 2018.05.03., 2018.05.10.)
② 위원장은 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.
③ 위원은 기획평가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9.06.25.)
④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인사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제6조(보고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, 비치하여 한다.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은 대학발전기획위원회 심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관계부서의 협조) 위원회는 교직원 및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행정지원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교직원 및 관계부서에서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8조(간사 및 서기) 위원회는 기획평가처에서 주관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들 수 있다. (개정 2019.06.25.)

제9조(경비지급)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소요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칙(기획예산부-198, 2018.04.12)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243, 2018.05.03)
이 규정은 2018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257, 2018.05.10)
이 규정은 2018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